2006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論 文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관한 연구

이영선

사단법인 한국선급

A Study on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Young Sun Le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요 약: 2006년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의 총회에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은 전문과 본문, 규칙, 코드 A 및 코드 B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이 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선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해사노동증서의 발급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준비와 관련한 검사 기관의 지정 및 관계자의 교육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해사노동증서, 노동적합선언서

ABSTRACT : *The Gener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on 23 February 2006 in Geneva, Swiss and it is composed of four structures of Preamble and Articles, Regulations, Code A and Code B. Accordingly, in the preparation of its future enforcement, amendments to the Seamen Act, etc. and relevant regulations are needed and regarding issue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preparation of The Declaration of Labour Compliance, relevant law and regulation for Recognized Organization and training for related persons, etc. should be established.*

Key words: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the Declaration of Labour Compliance

1. 서 론

1920년 이후 현재까지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이라 함)는 특별 해사총회를 개최하여 선원 모집과 직업소개, 최저연령, 근로시간, 안전, 건강과 복지, 근로감독 및 사회보장 등을 포함한 39개 협약과 29개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나 이러한 협약과 권고사항은 특정한 문제와 필요성에 따라 여러 가지 시기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사노동기준이 해운산업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였고 일부는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중복된 부분이 있으며 시간 및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 비준율이 낮았고 국제 협약으로의 기능이 미약하였다. 또한 ILO기준이 비삼자간 기구의 그것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최신화 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2001년 1월에 개최된 제29차 합동해사위원회(Joint Maritime Commission)는 ILO 집행이사회에게 2005년에 ILO 해사총회를 개최하여 ILO 해사노동기준의 기존내용을 가능한 한 통합하여 단일의 협약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6년 2월 5일부터 2월 23일 기간 중 스위스 Geneva에서 ILO 국제노동총회를 개최하여 전문과 본문, 규정, 코드 A 및 코드 B의 4단계로 구성된 해사노동협약을 제정 및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향후 세계상선 총선복량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할 것이다.

2. ILO 해사노동협약

2.1 해사노동협약의 8대원칙

산재하여 있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8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최신화되어 있는 국제해사노동기준의 전체 규정을 우선적으로 통합하되 가능한 한 입증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합한다. 둘째, ILO가 채택한 기준의 총체적 부분의 일부로 인식되고 타 국제해사 문건과 부합할 수 있도록 노동기준의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의 일관성 있는 협약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된 협약은 국제해사노동기준의 핵심원칙을 규정하는 다수의 편으로 구성한다. 넷째, 각 편은 세부적 요건을 규정하는 부속서를 두어 보완한다. 다섯째, 부속서에는 규정을 최신화하여 신속하게 발효시키기 위한 단순화된 개정절차를 마련한다. 여섯째, 협약에는 각종 권고의 실질적 내용과 기타 비강제규정도 포함한다. 일곱째, 정부, 선박소유자 및 양호한 근로의 원칙을 지지하는

선원 간에 가장 폭넓게 수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안을 작성한다. 여덟째, 자국 영역에 들어오거나 자국영역 내에 있는 모든 선박에 근로조건이 성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2.2 해사노동협약의 구성

해사노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은 전문과 조문, 규칙, 코드 A 및 코드 B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STCW 협약의 구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조문과 규칙 및 코드 A의 요건은 강제규정이고 코드 B의 요건은 임의규정이다. 조문은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의무,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기본권 및 원칙, 선원의 고용권 및 사회권, 이행 및 집행 책임, 규정 및 코드 A와 코드 B, 노사단체와 협의, 발효, 폐기, 발효의 효과, 기탁, 특별 삼자간위원회, 협약의 개정, 코드의 개정, 공식 언어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규칙은 해사노동원칙 및 권리에 해당하는 요소를 5개의 title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코드 A(Standards)는 세부 강제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코드 B(Guideline)는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의 일련번호와 같이 코드 A 및 코드 B도 같은 번호 체계를 사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작성되어 있다. 규칙 및 코드에서 기술한 노동 분야에 관한 요건의 요약은 Table 1과 같다.

2.3 규칙, 코드A 및 코드 B의 주요 사항

2.3.1 선원의 선내작업을 위한 최소 요건

협약이 발효할 때에는 만16세 미만의 자는 어떠한 경우든 선내 작업자로서 고용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의 자는 야간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야간 작업의 정의는 국내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최소 야간은 자정 이전에서 시작하여 익일 오전 5시 이후에 종료하는 기간으로 최소 9시간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직무상 특별한 사유에 의하거나 개정된 STCW 협약에 의하여 그 기간의 단축이 요구되지 않는 한 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효하다. 다만, 18세 미만의 선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색각에 대한 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6년간 유효하다.

사설 선원직업소개소의 과도한 난립을 법령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선원이 고용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며 또한 선원의 직업소개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어떠한 수수료나 비용도 선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비자 발급비용을 제외하고 국내 건강진단서, 국내 선원수첩과 여권이나 기타 유사한 개인여행문서의 발급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선내 고용조건 및 생활조건에 관한 불만사항이 사설 선원직업소개소와 관련되어 제기된 경우 사설 선원직업소개소는 그러한 모든 불만사항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부기관은 이러한 불만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2.3.2 근로 조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국내법에 규정할 고려 사항으로는 자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은 이 협약에 따라 양호한 근로 및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피고용 관계가 아닐 경우 다른 계약서나 관련 증빙서류에 본인 스스로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 전에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의사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원은 자신의 고용기록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단체협약으로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경우에는 사본을 본선에 비치하고 이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편 고용기록서에는 선원

Table 1: Labour Convention requirements according to each Title.

Title	Major Requirements
Title 1 Min. Requirement for Seafarers to work on a Ship	Minimum age, Medical certificate, Training and qualification, Recruitment and placement
Title 2 Conditions of Employment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Wages, Hours of work and hours of rest, Entitlement to leave, Repatriation, Seafare's compensation for the ship's loss or foundering, Manning levels, Career and skill development and opportunities for seafarer's employment
Title 3 Accommodation, Recreation Facilities, Food and Catering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y, Food and Catering
Title 4 Healthy Protection, Medical Care, Welfare and Social Security Protection	Medical care on board and ashore, Shipowner's liability, Healthy and safety protection and accident prevention, Access to shore-based welfare facilities, Social security
Title 5 Compliance and Enforcement	Flag State responsibility, Port State responsibility, Labour-supplying responsibility

의 업무성과 또는 임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할 수 없다.

임금의 경우 "총액임금은 기본급과 기타 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말하며 총액임금은 시간외 근로 및 기타 임금 관련 수당을 포함할 수 있거나 일부 수당만을 포함할 수 있다"로 정의되어 있고 관련 guideline에 의하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포함한 보수를 수령하는 선원의 경우는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 기본급 산출 기준이 되는 통상 근로시간을 국내법령으로 정하여야 하고 그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법령을 하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 및 휴식시간에 관해서는 주1일과 공휴일 휴식을 보장하고 통상 선원 근로시간의 기준을 8시간으로 하여야 하며 최대 근로시간은 1일에 14시간과 7일에 기준 72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최소 휴식시간은 1일에 10시간과 7일에 77시간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휴식시간은 2회로 분할할 수 있으며 그중 한번은 6시간 미만이여서는 아니 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항해 중 및 항구에 정박 중에 작업 일정 및 최대근로시간과 최소휴식시간을 포함한 표를 영어로 작성하여 선박 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에서는 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송환과 관련한 특이사항으로는 국적선 내 적절한 언어로 된 송환 관련 국내 조항 책자를 본선 내 구비하여야 하며 선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선박이 멸실하거나 침몰되었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본선 내 각 선원에게 그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에 기인한 실업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실업보상금산정 지침으로 계약에 의하여 지불하는 임금과 동일한 비율로 선원의 실제 실업일수에 대하여 지불하되 다만, 본 협약에 의거하여 1인의 선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보상금의 총액은 2개월분의 임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의 등록과 관련한 지침으로는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등록부 또는 명부상의 선원의 정수는 해양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3.3 거주설비, 복지시설, 음식과 조리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선원 거주설비 및 선내 복지시설에 관한 코드의 개정요건은 개정 요건이 발효된 날 이후 건조된 회원국의 선박에 대하여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거주 시설 및 선내 오락시설에 관해서는 선박을 등록하고자 하거나 또는 재등록할 경우와 선박의 선원거주설비를 완전히 개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주구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모든 선원 거주구역 내의 최소 허용 높이는 203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관청은 거주구역내의 일정 구역 또는 구역의 일부분이 특별히 인정될 경우에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침실의 위치에 관해서는 여객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침실은 선박의 중앙 또는 선미의 만재흘수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선박의 크기, 형태 또는 용도에 따라 상기 장소에 침실을 설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수부에 배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격벽의 전방이어서는 아니 된다. 침실에 관한 요건으로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에는 각 선원에 대하여 개별 침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주관청은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1983년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특수 목적선에 대한 안전 코드에 따라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관련 선주 및 선원단체와 협의 결과에 따라 동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식 및 조리의 경우 10명 미만의 선원으로 운항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수와 항해 형태를 감안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요리사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내 주방에서 음식, 개인위생, 음식저장 및 처리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선박 요리사의 나이는 18세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2.3.4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 보호

책임당국은 선장, 육상 및 선내 관련 의료요원이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료보고서 서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작성된 서식과 해당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선원의 의료처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한다. 선상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포함될 사항 중 하나로 책임당국은 미리 준비된 제도에 의하여 항행중인 선박에게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전문적 조언을 포함한 의료조언을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료조언은 게양하는 국기에 무관하게 모든 선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건강, 안전보호 및 사고방지와 관련하여 주관청은 직업상의 사고 및 질병의 보고 및 기록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한 지침을 고려하여 직업상의 사고, 상해 및 질병이 적절히 보고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고 및 질병의 광범위한 통계가 유지, 분석 및 출판되고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향과 명확한 위험에 대하여 연구 및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3.5 적합 및 시행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선원을 위한 작업 및 거주 조건이 이 협약의 기준에 만족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사 근로조건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설립하여야 한다. 검사의 시행 또는 증서 발급을 위하여 독립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한 경우에도 각 회원국은 검사 및 증서발급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공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Authorization of Recognized Organization

Item	Requirement for Authorization
a	• expertise in relation with the convention • knowledge of ship operation including min. requirement for seafarers to work on board, conditions of employment, accommodation, recreational facilities, food and catering, accident prevention, health protection, medical care, welfare and social security protection
b	• ability to maintain and update the expertise
c	• knowledge of the requirement of convention as well as applicable national laws, regulation and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
d	• size, structure and experience and capability commensurate with the type and degree of authorization.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회원국은 모든 적용 가능한 국내법, 규정 및 국제협약문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검사대행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및 검사대행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검사대행기관의 감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해사협약을 적합하게 운영한다는 증거로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노동적합선언서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적용 요건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과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다른 나라의 항구로부터 또는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또한 총톤수 및 국제항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이라도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노동적합선언서에서 규정한 사항이 준수되고 또한 선원의 작업 및 거주조건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의 요건 또는 다른 조치를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해사노동증서를 비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해사노동증서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주관청 또는 정당하게 위임 받은 검사대행기관이 발급한다. 검사의 종류로는 초기검사, 중간검사와 갱신검사로 나눌 수 있으며 중간검사의 경우 해사노동증서의 둘째 및 셋째 연차일 사이에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완료 후 해당 증서에 이서한다. 해사노동증서는 선박을 건조하여 인도하거나 국적변경 또는 선주가 운항 경험이 없는 선박에 대한 운항 책임을 맡을 경우에는 6월을 넘지 않는 임시증서(Interim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임시 증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해사노동적합 선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한편 해사노동증서에 첨부하여야 할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부는 주관청이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 사항의 목록 그리고 필요한 범위까지, 국내 요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결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법령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여 국내 요건을 식별한다. 제2부는 선박소유자가 작성하여 주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검사와 검사 사이의 기간 중 국내 요건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제안된 조치를 식별하여야 한다. 또한 후속 검사 또는 검증 결과와 그러한 검증 중 발견된 모든 중요한 결함은 그 결함이 시정된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해사노동증서 및 해사노동 적합선언서는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어번역문과 함께 본선에 비치하고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협약의 요건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자국 선박을 검사할 경우 검사 기간은 전회 검사로부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 중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이 협약에 규정된 요건에 중대한 위반이 되거나, 선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가 취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검사 종료 후 주관청에 각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 또는 선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된 보고서의 사본 1부는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선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자국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조건에 대한 검사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검사가 관련된 년도 말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적당한 시간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사고에 따른 조사의 경우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한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의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선내절차를 요구하여야 하며 모든 경우에 선원은 불만 사항을 선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외부기관에도 제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선원은 선박에서 적용 가능한 선내 불만처리절차의 사본을 제공받아야한다.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관련된, 인명의 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중대한 해양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조사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는 공표하여야 한다. 입.출항 하는 선박의 경우 협약이 준수되는지를 항만국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자국 항구내에서의 검사는 코드에서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증서와 선언서의 검토에 국한하여야 한다. 항만국검사 결과 선내의 상태가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이 명백히 위해가 되거나 또는 식별된 부적합사항이 협약의 요건을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될 때까지 또는 식별된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계획이 승인되거나 그 계획이 신속하게 시행될 때까지 그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여야한다. 선원을 공급하는 각 회원국에는 검사 및 감독 제도와 면허 및 기타 운영상의 위반에 대한 소송절차를 통하여 자국 영토내에 등록된 선원고용업체에 대한 운영 및 실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협약의 요건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국내법령 운영실태

협약과 관련한 국내법령으로는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선원법시행규칙, 선원근로감독관규정,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선원보험법,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선원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칙,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선박직원법시행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실제 법령의 요건과 국제해사통합노동협약과의 요건을 비교하여 실제 무엇을 검토 및 보완하여야 하는 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선원법의 관련 조항 중 개정된 협약에 비추어 일부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법 제3조에는 선원의 정의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협약에서는 본문 제2조의 1(f)항에 의하면 "선원"이라 함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일하는 일체의 자를 말한다 "로 규정되어 실제 시추선에서 시추 작업에 임하는 자들과 같이 통상의 선원이 아니면서 선상에서 근로하는 자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선원법의 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관련 조항에 선원이 선내불만을 처리하는 규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선원법시행규칙 제 20조 ②항에는 선주와 선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각각 소지한다는 규정의 보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선원의 근로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경우에는 사본을 본선에 비치하고 이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과 선원은 자신의 고용기록서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근거 조항의 추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원의 임금의 경우에도 기본급과 총액임금의 정의를 관계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분명히 하여 퇴직금의 산정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선내급식의 경우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7조 ②항에서는 승선하는 선원 수에 의한 규정보다는 3개의 경우 중 하나를 만족하면 가하다는 규정으로 되어있으며 조리사의 최저 연령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원관련 법령에는 협약에 규정되어 잇는 것처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무선 또는 위성통신에 의하여 24시간 의료 조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행 중인 근로감독관의 자격기준도 일부 재검토하여 전문지식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규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자격이 부여된 감독관에 대하여 매년 시행되는 직무교육의 내용도 협약과 비교하여 필요시 일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에서 새로이 도입된 개념인 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근거 조항과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자격을 규정하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며, 주관청 및 선박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할 노동적합선언서를 선박에 비치 및 게시하여야 한다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만국검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부적합사항의 처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협약의 비준 및 발효 요건을 감안하면 향후 수년 내에 협약이 발효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국내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며 특히 선원법을 우선으로 하여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기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선원보험법,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선원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칙, 선박직원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조문도 세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설할 조항의 식별 및 이에 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금번 협약에 새로이 도입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선박보안심사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검사제도의 구축, 필요시 검사대행기관의 인정 기준의 제정과 항만국검사의 시행과 관련한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선박소유자, 선원노동조합, 해운 및 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하여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법령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2] The Minimum Age Convention, 1973(No. 138)

[3]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No.105)

[4]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the Port Facilities(ISPS Code), IMO, 2002

[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in 1995

[6] 선원법, 법률 7479호(2005.3.31)

[7] 선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543호(2004.9.9)

[8] 선원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77호(2004.8.7)

[9] 선원근로감독관규정, 대통령령 제17642호(2002.6.25)

[10]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37호(2002.10.1)

[11]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8059호(2003.7.25)

[12]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규칙, 교통부령 제837호(1986.6.4)

[13] 선원보험법, 법률 제5454호(1997.12.13)